

무배당 대한유니버설적립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월계약해당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기본보험료”라 함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4.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만기나이-2)세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이내로 합니다.
5. “월대체보험료”라 함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단, 수금비는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제 4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서 부분에 갈음하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송부하고,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2. 기본보험료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심사한 후에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승낙된 경우 변경되는 기본보험료의 적용은 승낙일 이후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심사한 후에 승낙여부를 결정합니다.

⑥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5항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충족하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⑧ 제5항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자가 신청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승낙된 경우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의 적용은 승낙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⑨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7 조 완납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7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까지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가입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80세 계약해당일에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이하 “전환”이라고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이 때 전환하는 완납종신보험은 전환 당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으로서 회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전환되는 경우 완납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전환을 신청한 이후 제2항에 의하여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자는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후 계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8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1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기준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회사에 납입된 납입보험료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월대체보험료의 공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 이내에는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경과 후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대체보험료를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2.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특약보험료 포함)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6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제 17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⑥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除)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에서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며 한달간 적용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21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5%(단,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시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22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3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4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6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7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8 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9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0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1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32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공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의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가지급 보험금 포함)의 지

금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34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35 조 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6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가능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출직후 계약자적립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미만이 될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불가합니다.

제 36 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7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40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1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42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43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경우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주)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2.5%(단,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시 2.0%)입니다.
 5.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6. 제7조(완납종신보험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은 전환당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으로 이루어지며, 완납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전환후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은 전환후 상품을 따릅니다).
 7. 제7조(완납종신보험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3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16조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보험금 (제16조 제1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1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3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애분류표

1 총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의 장애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노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 야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 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되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 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ㅈ, ㅊ)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련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애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예를 들어,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 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 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연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 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은 미국의사협회 (A.M.A.) “연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하지(다리과 발가락)의 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 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 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 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 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 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 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 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이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 4 】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주)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무배당 신정기특약(본인형,배우자형)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1항, 제7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1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2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14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 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지급

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1조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와 동일

무배당 신체감정기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를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1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2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14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금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경과기간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아래와 같이 지급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	
		5년미만	1,500만원 지급
		5년이상 10년미만	1,000만원 지급
		10년이상	500만원 지급

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1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애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무배당 신수입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를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고 장애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애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하 “한시장애”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의 장애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1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2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14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금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만원씩 지급(단, 5년 보 증지급)

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1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무배당 신교통재해사망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율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연생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를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교통재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2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3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15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4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0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2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교통재해 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무배당 신재해보장특약1종(본인형·배우자형)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제 10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항,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항,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및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단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⑩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⑪ 제1항, 제7항, 제10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1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2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14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지급
재해장해급여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 중 3% 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애지급률 지급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애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1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애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무배당 신재해의료특약1종(본인형·배우자형)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제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특약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재해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에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재해골절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이하 “의사”라 합니다.)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10 조 “현저한 추상” 및 “추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현저한 추상”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추상”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현저한 추상” 및 “추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11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골절진단자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성형치료자금 지급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재해수술자금 지급

제 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1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분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 제6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⑧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두가지 이상의 추상 또는 현저한 추상을 입었을 경우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성형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⑩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추상 또는 현저한 추상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보험사고로 보고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성형치료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제 14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5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골절진단서, 수술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6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7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골절진단자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30만원
성형치료자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현저한 추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300만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200만원
재해수술자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00만원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골절진단자금, 성형치료자금, 재해수술자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재해골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것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S02(S02.5는 제외)
목의 골절	S12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넙다리뼈의 골절	S7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재해골절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재해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골절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신암진단특약II(1종)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講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고 장애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애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의하여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⑦ 제2항의 경우 장애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하 “한시장애”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의 장애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 ⑧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2항 및 제8항에 있어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를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무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제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0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 4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단, 제10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1 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각각 1회한) 치료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암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제 1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

정일로 하여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④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⑤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기타피부암을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15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6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암진단확인서, 암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18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9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경과기간	
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상	200만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그 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지급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7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치료자금, 사망보험금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7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D45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신성인병진단특약 약관(본인형, 배우자형)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가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 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단, 외상성 머리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의사가 부검소견서 또는 사망이전의 병력을 근거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확정진단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병력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치료자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1항, 제7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3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확인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각각1회한)	1년미만	500만원 지급
		1년이상	1,000만원 지급

- 주)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리며,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애분류표 (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5조 제 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치료자금 (제11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3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애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뇌출혈 분류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신선진의료보장특약 약관(본인형, 배우자형)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효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가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시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 10 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의 이식수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암 또는 골수부전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타인의 골수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제공받아 수혜자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강력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독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암환자 자신의 골수내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 고량화학요법(high-dose myeloablative therapy)을 시행하고 그 후에 이 조혈모세포를 암환자 자신에게 다시 투여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강력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독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암환자 자신의 말초혈액 내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 고량화학요법(high-dose myeloablative therapy)을 시행하고 그 후에 이 조혈모세포를 암환자 자신에게 다시 투여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4.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타인의 제대혈(배꼽의 탯줄의 혈액)속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대량 항암요법으로 암환자의 골수를 완전히 억제시킨 다음 제대혈모세포를 투여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 11 조 특정 인공의재료(人工醫材料) 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 인공의재료(人工醫材料) 수술”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인공수정체삽입술, 영구형 인공심박조율기거치술,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골두삽입술을 말합니다.

1. “인공수정체삽입술”이라 함은 수정체적출술로 무수정체안 상태가 된 눈의 시력장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방인공수정체 또는 후방인공수정체를 본래의 수정체 자리에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2. “영구형 인공 심박조율기거치술”이라 함은 부정맥의 치료를 위해 가슴 상부를 절개하여 “영구형 인공심박조율기”를 몸안에 장치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응급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작동하게 한 “임시형 심박조율기”를 장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인공관절치환술”이라 함은 고관절(엉덩이관절), 슬관절(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여기에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을 삽입하여 대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4. “인공골두삽입술”이라 함은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를 해당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대치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 12 조 주요성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성인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요성인질환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성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13 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환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성인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서, 의사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14 조 주요성인질환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주요성인질환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주요성인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15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6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 5대장기이식수술자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한)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정인공의재료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특정인공의재료수술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요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주요성인질환수술자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성인특정질환입원급여금 지급

제 17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배우자형의 경우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1항, 제6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특정인공의재료수술로 인한 특정인공의재료수술자금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특정인공의재료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⑨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성인특정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성인특정질환 제3형에 의한 입원급여금의 경우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제 18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확인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0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21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5대장기이식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한)	1,000만원 지급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한)	1,000만원 지급
특정인공의재료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정인공의재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50만원
주요성인질환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주요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3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만 1년 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주요성인질환으로 인한 수술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지급
성인특정질환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형 : 5만원 2형 : 3만원 3형 : 2만원 지급

- 주)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리며,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5대장기 : 간장, 신장, 췌장, 심장, 폐장
4.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동종골수조혈모이식수술,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5. 특정인공의재료수술은 인공수정체삽입술, 영구형 인공심박조율기거치술,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골두삽입술을 말합니다.
6. 특정인공의재료수술로 인한 수술자금에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특정인공의재료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특정인공의재료수술로 인한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7.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성인특정질환 제3형에 의한 입원급여금의 경우는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0조 제 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5대장기이식수술자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자금 특정인공의재료수술자금 주요성인질환수술자금 성인특정질환입원급여금 (제16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8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주요성인질환 분류표

주요성인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	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I05 ~ I09
허혈성 심장 질환	I20 ~ 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 I28
급성 심장막염	I30
기타 심장막의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 승모판 장애	I34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	I35
비류마티스 삼첨판 장애	I36
폐동맥판 장애	I37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 장애	I39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심장근육병증	I42
발작성 빠른맥	I47
심방 전떨림 및 된떨림	I48
심장기능상실(심부전)	I50
거미막밑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바이러스 간염	B15 ~ B19
독성 간질환	K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기능상실	K72
간의 섬유증 및 경화	K74
콩팥(신장)기능상실	N17 ~ N19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지속 상태	J46
기관지확장증	J47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성인특정질환 분류표

성인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1형]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장 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	I01
류마티스 승모판 질환	I05
류마티스 대동맥판 질환	I06
류마티스 삼첨판 질환	I07
다발성 판막 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 심장 질환	I09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I21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I24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5
폐 색전증	I26
기타 폐성 심장 질환	I27
기타 폐혈관의 질환	I28
급성 심장막염	I30
기타 심장막의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 승모판 장애	I34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	I35
비류마티스 삼첨판 장애	I36
폐동맥판 장애	I37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 장애	I39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신장근육병증	I42
발작성 빠른맥	I47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I48
심장기능상실(심부전)	I50
거미막밑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제2형]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급성 A형간염	B15
급성 B형간염	B16
기타 급성 바이러스간염	B17
만성 바이러스간염	B18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B19
독성 간질환	K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기능상실	K72
간의 섬유증 및 경화	K74
급성 콩팥(신장)기능상실	N17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N18
상세불명의 콩팥(신장)기능상실	N19

[제3형]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남 녀 공 통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미만성(풍토성) 갑상샘증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다결절성(풍토성) 갑상샘증 기타 갑상샘 기능저하증 기타 비중독성 갑상샘증 갑상샘중독증(갑상샘 기능항진증) 갑상샘염	E01.0 E01.1 E03 E04 E05 E06
	인슐린-의존 당뇨병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0 E11 E1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콩팥(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이차 고혈압	I10 I11 I12 I13 I15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 상태	J40 J41 J42 J45 J46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화농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 감염 반응성 관절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청소년성 관절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청소년성 관절염 통풍 기타 결정성 관절병증 기타 특정 관절병증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다발성 관절증 영덩관절증 무릎관절증 제1손목손허리 관절의 관절증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 무릎뼈의 장애 기타 명시된 관절 이상 전신 홍반성 루푸스 전신 경화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뼈 연속성의 장애	M00 M01 M02 M03 M05 M06 M07 M08 M09 M10 M11 M12 M14 M15 M16 M17 M18 M20 M21 M22 M24 M32 M34 M80 M82 M84
	노년 백내장 기타 백내장	H25 H2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급성 충수염 기타 충수염 상세불명의 충수염 충수의 기타 질환 담석증 담낭염	H28 K35 K36 K37 K38 K80 K81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남 자	급성 신염 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 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 증후군	N03
	신 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 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터를 동반한 고립성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
	급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N10
	만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세뇨관-사이질성 신염	N12
	폐쇄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성 세뇨관-사이질성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세뇨관-사이질성 질환	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세뇨관-사이질성 장애	N16
	콩팥(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하부 요로의 결석	N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2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산통	N23
	세뇨관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위축	N26
	원인미상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콩팥(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콩팥(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 장애	N31
	요도 협착	N35
	전립샘의 증식	N40
여 자	양성 유방 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비대	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소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자궁관염 및 난소염	N70
	자궁목을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	N72
	기타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N7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N74
	자궁내막증	N80
	여성 생식기 탈출	N81
	여성생식기를 포함한 셋길(누공)	N82
	자궁목의 형성이상	N87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신질병간호특약 약관(본인형·배우자형)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 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단, 제9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또는 기타피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0 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성인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1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4 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간병자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 통원자금 지급

제 16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배우자형의 경우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고 장애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장애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이하 “한시장애”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의 장애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1항, 제6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간병자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8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인특정질환에 의한 입원이더라도 간병자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⑩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8항에 따라 계속 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⑪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동 지급사유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⑫ 제11항에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간병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8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9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

무배당 신질병간호특약 약관(본인형·배우자형)

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20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간병자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0일초과 1일당 제1형 : 3만원 제2형 : 2만원 지급
통원자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당 2만원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당 제1형 : 2만원 제2형 : 2만원 제3형 : 1만원 지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1회당 1만원 지급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및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간병자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9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간병자금, 통원자금 (제15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7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별표 5】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 무배당 신암진단특약Ⅱ(1종) 【별표 5】와 동일

【별표 6】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 무배당 신암진단특약Ⅱ(1종) 【별표 6】과 동일

【별표 7】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무배당 신암진단특약Ⅱ(1종) 【별표 7】과 동일

【별표 8】성인특정질환 분류표

- 무배당 신선진의료보장특약 【별표 6】과 동일

무배당 신수술보장특약 약관(본인형·배우자형)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율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가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시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수술자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거나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 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④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1항, 제8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2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3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 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금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500만원 지급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되거나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4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수술자금 (제10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2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별표 5】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 분류표>

I. 일반질병 및 재해 치료 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 명	수술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 이식술(移植術) (25㎠미만은 제외, 피부의 양성종양 제거술 제외)	3종
	2. 유방 절단술(切斷術, Mastectomy)	3종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등 내 고정물 제거술, 비(非)관혈적(觀血的) 정복술(整復術)은 제외함] [치(齒) · 치은· 치근(齒根) · 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3. 골(骨) 이식술	2종
	4. 골수염(骨髓炎), 골결핵(骨結核) 관혈수술(觀血手術) [농양(膿瘍)의 절개는 제외함]	3종
	5.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비중격(鼻中隔)·상악골(上顎骨)·하악골(下顎骨)·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종
	6. 비골(鼻骨) 관혈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1종
	7.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종
	8.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관혈수술	3종
	9.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2종
	10. 사지(四肢) 절단술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3종
	11. 절단(切斷)된 사지(四肢) 재접합술(再接合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종
	12.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2종
	13. 근(筋), 건(腱), 인대(靱帶) 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筋炎), 결절종(結節腫), 점액종(粘液腫) 수술은 제외함]	1종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4.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종
	15. 후두(喉頭) 전적제술(全摘除術)	3종
	16.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종
	17.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종
	18. 흉곽(胸郭) 형성술(形成術)	3종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19. 종격종양(縱隔腫瘍) 적출술(摘出術)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종
	20. 관혈적(觀血的) 혈관 성형술(血管成形術, Angioplasty)·혈관우회술(迂廻術, Bypass operation)	3종
	21.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1종
	22.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종
	23. 심막(心膜) 절개봉합술(切開縫合術)	4종
	24. 직시하 심장내(直視下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종
	25. 심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5종
	26.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종
	27. 비장(脾腸) 적제술	3종
소화기계의 수술	28. 이하선종양(耳下腺腫瘍) 적출술	3종
	29. 악하선종양(顎下腺腫瘍) 적출술	2종

구분	수술 명	수술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0.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종
	31. 위 절제술(胃 切除術, Gastrectomy)[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종
	32. 기타의 위·식도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종
	33.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3종
	34. 간장(肝臟), 췌장(胰臟)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종
	35.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종
	36. 간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종
	37. 췌장 이식수술[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종
	38. 담도계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종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종
	40.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종
	41.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2종
	42.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종
	43.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종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	44. 신장(腎臟), 신우(腎盂), 요관(尿管)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4종
	45. 방광(膀胱) 관혈수술[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종
	46.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수용자에 한함]	5종
	47. 요로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종
	48. 요도협착(尿道狹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3종
	49. 요루폐쇄(尿屢閉鎖, Urinary fistulectomy)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3종
	50. 음경(陰莖) 절단술	3종
	51. 고환(睪丸), 부고환(副睪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종
	52. 음낭수종(陰囊水腫) 근본수술	1종
	53. 자궁(子宮) 전(全)절제술	2종
	54. 자궁경관(子宮頸管) 형성술, 자궁경관 봉축술(縫縮術)	1종
	55.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종
	56. 자궁외 임신(子宮外 妊娠)수술	2종
	57. 자궁탈(子宮脫)·질탈(陰脫)근본수술	1종
	58. 기타의 자궁수술[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중절술(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1종
	59. 난관(卵管), 난소(卵巢) 관혈수술 [경질적(經腔的)조작은 제외함]	2종
	60. 기타의 난관(卵管), 난소(卵巢)수술	1종
내분비계의 수술	61.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관혈적 적제술	5종
	62.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절제술	3종

구분	수술 명	수술종류
내분비계의 수술	63. 부신(副腎) 전(全)적제술	4종
신경계의 수술	64.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종
	65. 신경(神經) 관혈수술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減壓術), 개방술, 염제술(捻除術)]	2종
	66.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적출술(摘出術)	4종
	67.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内外) 관혈수술	3종
시각기(視覺器)의 수술	68.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1종
	69. 누소관(淚小管)형성술	2종
	70. 누낭비강(淚囊鼻腔) 문합술(吻合術)	2종
	71. 결막낭(結膜囊) 형성술	2종
	72. 각막(角膜) 이식술	2종
	73. 관혈적 전방(前房), 홍채(虹彩), 초자체(硝子體),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술(異物除去術)	2종
	74. 홍채(虹彩) 전후유착 박리술(前後癒着 剝離術)	2종
	75.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종
	76.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종
	77. 초자체(硝子體) 관혈수술	2종
	78.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2종
	79. 레이저(Laser)·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술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종
	80.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종
	81. 안와종양(眼窩腫瘍)적출술	3종
	82. 안근(眼筋)이식술	2종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83. 관혈적 고막(鼓膜), 고실(鼓室) 형성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3종
	84. 유양동 삭개술 (乳樣洞削開術, mastoidectomy),	1종
	85. 만성중이염 중이(中耳) 근본수술	2종
	86. 내이(內耳) 관혈수술	3종
	87. 청신경종양(聽神經腫瘍) 적출술 [개두술(開頭術)을 수반하는 것]	5종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 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8.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종
	89.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종
	90.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종
	9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91-1. 뇌, 심장	3종
	91-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종

(주) 상기 1~90항의 수술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수술은 91항을 적용합니다.

II.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 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5종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間に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3종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間に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종

- (주) 1. 상피내암·경계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I.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 목적의 수술’항목의 적용을 받음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종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종

- (주) 1.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間に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 고식적(姑息的), 보조적(補助的)·근치 목적 이외의 방사선 조사는 제외함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사용 지침)

-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혈(觀血)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정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때에 해당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보험기간중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間に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합니다.
 -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수술분류표>중 ‘일반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91항(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선형가속기에서 발생하는 가느다란 방사선 이용)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방사성 동위원소(Co-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頭蓋)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무배당 신수술보장특약 약관(본인형·배우자형)

-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 2)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 3)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 檢査) 등]

무배당 신입원보장특약 약관(본인형·배우자형)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과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1항, 제6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8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⑩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⑪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8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3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리며,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4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제10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2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애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치료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㉞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합니다.

무배당 신질병입원보장특약1종 약관(본인형·배우자형)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본인형의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적용하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을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본인형 또는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장애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분류표(별표 5 참조)에 정하는 질병(이하 “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1항, 제6항 및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8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⑩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⑪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8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3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4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금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

-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리며,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4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제10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2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애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질병 분류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II. 신생물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장애	A00~B99 C00~D48 D50~D89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VI.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VII.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VIII.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H60~H95
IX.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X.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X I.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X II.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L00~L99
XIII.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XIV.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N99
X V.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XVI.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XVI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아의 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무배당 신자녀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특약 체결시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자녀(직계비속을 포함)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4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 조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7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 교통재해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1 조 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2 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5 조 재해골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써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16 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별표 11 참조)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17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1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또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각각 1회한) : 치료자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 재해골절자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자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입원급여금 지급

제 19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지급사유별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⑨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⑩ 제1항 및 제6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⑪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에 해당하는 치료자금에서 해당시점의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치료자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은 제외)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⑫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과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이 동시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에 해당하는 치료자금만을 지급합니다.
- ⑬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분류에 따라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⑭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⑮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⑯ 제15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⑰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⑱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7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⑲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7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⑳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1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진단확인서, 수술치료확인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2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2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경과기간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그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1회한)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회한)	1년미만	100만원
		1년이상	200만원
재해골절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재해골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회당 20만원 지급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급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500만원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	

- 주)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거나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4.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6.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에 해당하는 치료자금에서 해당시점의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치료자금(기타피부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자금은 제외)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과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이 동시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에 해당하는 치료자금만을 지급합니다.
8. 약관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기타피부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장해급여금, 치료자금, 재해골절자금, 수술자금, 입원급여금 (제18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0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장해분류표

- 주계약 【 별표 3 】 과 동일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4 】 와 동일

【 별표 5 】 교통재해 분류표

- 무배당 신교통재해사망특약 【 별표 5 】 와 동일

【 별표 6 】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 무배당 신암진단특약Ⅱ(1종) 【 별표 5 】 와 동일

【 별표 7 】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 무배당 신암진단특약Ⅱ(1종) 【 별표 6 】 과 동일

【 별표 8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무배당 신암진단특약Ⅱ(1종) 【 별표 7 】 과 동일

【 별표 9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종양	C40 - C41
2. 뇌 및 뇌수막의 악성종양	C70.0, C71
3. 백혈병	C91 - C95

※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10 】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 무배당 신재해의료특약1종 【 별표 5 】 와 동일

【 별표 11 】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 무배당 신수술보장특약 【 별표 5 】 와 동일

【 별표 1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 무배당 신입원보장특약 【 별표 5 】 와 동일

무배당 대한연금전환특약 약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부가하여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으로서 부가(연금전환 신청)시점에서 본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타 급여금 등(이하 “지급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④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개인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부부형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⑤ 전환전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연금지급 개시와 동시에 전환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형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형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형 계약의 경우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형 계약의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부부형 계약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주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종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부부형 계약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연금지급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 ④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다른 연금지급형태의 경우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5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부부형 계약에 있어서 종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개시나이에 도달했을 경우에 생존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8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에서 책임준비금 및 생존연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9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5%(단, 계약일부터 10년이상 경과시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0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1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2 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별표 1 】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 내 용	
생존연금	1. 종신연금형 가. 10년보증지급 ① 개인형 (정액형, 체증형(5%, 10% 체증), 체감형(5%, 10% 체감))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일 이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보증지급)
	② 부부형 (정액형, 체증형(5%, 10% 체증), 체감형(5%, 10% 체감))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부터 10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주피보험자의 10차년도 연금액의 50%를 지급
	나. 20년보증지급 ① 개인형 (정액형, 체증형(5%, 10%체증), 체감형(5%, 10% 체감))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일 이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20년 보증지급)
	② 부부형 (정액형, 체증형(5%, 10%체증), 체감형(5%, 10% 체감))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20년 보증지급)
	연금개시일 이후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이후부터 20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주피보험자의 20차년도 연금액의 50%를 지급
	2.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지급개시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80세)
	3.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일 이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

주)1.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이란 연금개시나이이전에 발생한 전환전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타 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2.5% (단,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경과시 2.0%)로 합니다.

3.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생존연금도 변동합니다.

4. 체증형 또는 체감형 선택시 연금액은 10년보증지급의 경우 10차년도까지 연단위로 체증 또는 체감하며, 10차년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 또는 체감률(5%, 10%)로 체증 또는 체감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 해당액으로 합니다. 단, 20년보증지급의 경우 20차년도까지 연단위로 체증 또는 체감하며, 20차년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 또는 체감률(5%, 10%)로 체증 또는 체감한 금액을 말하며, 2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20차년

도 연금 해당액으로 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주 6 참조)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주 6 참조)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이란 10년, 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 말하며, 확정연금형의 경우 해당 연금지급기간이란 다음중 선택한 기간을 말합니다.
 - 5년, 10년, 15년, 20년
 - 연금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
7.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각 해당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에는 미지급된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8. 상속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전환일부터 1년후 계약해당일부터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0. 생존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1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생존연금 (제6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50% 1년 초과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9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50% 1년 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에 의하며, 소멸시효(제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